

# 코로나19와 정보인권

1. 서문 .....	3
2.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인권의 원칙 .....	5
3. 감염병 대응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한국의 법제 .....	10
4.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이슈 .....	11
(1)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 .....	11
(2) 확진 환자의 동선공개 .....	28
(3)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 .....	39
(4) 출입자 명단 작성의 의무화 .....	42
5. 결론 .....	46

※ 이 보고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의 공동연구로 작성되었으며,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2020-11 (통권 제9호)

###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발행인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이호중)

발행일 : 2020년 11월 20일

♣ 일시후원/후원회원 신청은 홈페이지 <http://idr.jinbo.net>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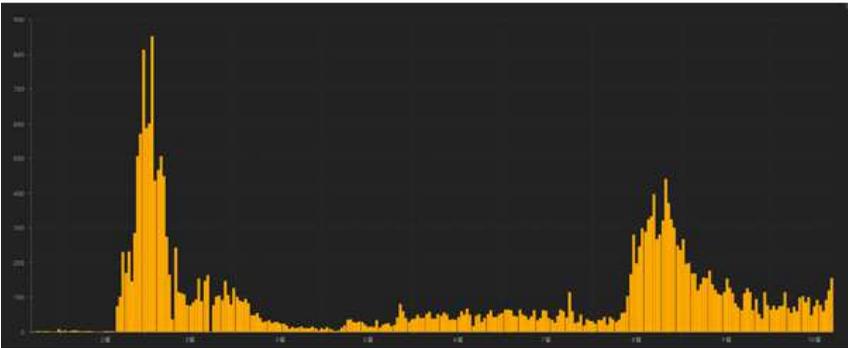
#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sup>1)</sup>

## 1. 서 문

한국에서 코로나19 첫번째 확진 환자는 2020년 1월 20일에 보고되었다. 2020년 10월 2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5,698명, 사망자는 455명이다. 이는 확진 환자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8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5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고려할 때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1>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출처 :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JHU)

1) 필자: 오병일, 장여경, 정선화(활동명 희우)

이미 2020년 초부터 여러 해외 언론들이 우한지역을 봉쇄한 중국의 대응과 비교하며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성공적 방역의 요인으로는 진단 시약의 재빠른 개발 및 승인, 감염병 환자의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파악, 신속하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사, 확진자 동선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마스크 착용 문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K-방역모델’로 명명하며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sup>2)</sup> 한국 정부가 ‘K-방역모델’을 ‘① 검사·확진→② 역학·추적→③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로 표현한 것과 같이, 이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와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강정보, 위치정보, 취향과 인적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림2〉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6.11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로드맵) 발표 -. 2020.6.11.

감염병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국가 감시와 인권 침해, 소수자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경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위치추적 등 한국과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얼굴인식 기술<sup>3)</sup>이나 드론<sup>4)</sup>과 같이 인권침해 위험이 더 큰 기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감시 조치가 방역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심도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더구나 한국은 해외 입국의 제한이나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혹은 통행 금지와 같은 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감염자의 수를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동권에 대한 제한 역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모델이 더 억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강력한 감시 조치가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감시 기술의 활용이 코로나19 대응에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방역 성공에 영향을 미친 다른 더 큰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한국의 모델을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2.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인권의 원칙

한국의 방역 정책은 그 효과성과 함께 인권의 기준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채택

---

3) VICE News, Moscow's Facial Recognition Tech Will Outlast the Coronavirus, 2020.4.16.

4) The Economic Times, Covid-19 lockdown: Authorities rely on drone eye to maintain vigil, 2020.4.12.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들이 공공위기사황이나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본권을 위협해왔다. 이 때문에 이미 1984년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시라쿠사 원칙<sup>5)</sup>을 채택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 발간한 책자에서, 공중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을 간섭하는 일은 최후의 방편으로만 가능하며, 시라쿠사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제한은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야하며 검토를 거쳐야 한다.<sup>6)</sup>

- ▶ 제한은 법률에 명시되고 그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 ▶ 제한은 정당한 공익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 ▶ 제한은 민주사회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덜 침해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 제한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개인정보 감독기구, 인권단체 등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인권 원칙에 기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봉쇄(lockdown), 검역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들은 항상 엄격한 인권 기준에 따라, 그리고 위험 대응에 필요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sup>7)</sup> 유엔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19와 인권’ 정책 문서를 발표하며 “모든 긴급 조치는 적법하

---

5)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of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nex, UN Doc E/CN.4/1984/4 (1984)

6) World Health Organization, 25 Questions and Answers on Health and Human Rights, 2002.

7) UN OHCHR. Coronavirus: Human rights need to be front and centre in response, says Bachelet. 2020.3.6.  
<https://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668&LangID=E>

고, 비례적이며, 필요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초점과 기간을 갖아야 하고,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가장 덜 침해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8)</sup>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역시 일반적인 인권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을 발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이다.<sup>9)</sup>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일정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기본권을 무효화할 정도의 일반적 제한이어서는 안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비례적인 조치여야 하며, 법에 근거해야 하고 그 제한의 기간이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10)</sup> 휴먼라이츠워치, 엠네스티, 엑세스나우 등 세계적인 시민사회, 인권단체 역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가 자칫 항상적인 디지털 감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들을 권고하였다.<sup>11)</sup> 또한 이러한 조치의 수립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 특히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가와 가장 소외된 집단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였다.

---

8) UN OHCHR. We are all in this together: UNSG delivers policy brief on COVID-19 and human rights. Statement by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2020.4.23.

9) 한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월 5일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 설립을 준비 해야했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범 이후인 9월 11일에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10) EDPB. Thirtieth Plenary session: EDPB response to NGOs on Hungarian Decrees and statement on Article 23 GDPR. 2020.6.3.

11)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기술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020.4.2.

<https://www.hrw.org/ko/news/2020/04/02/340273>

한편,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뉴욕시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인권을 위한 도시들(Cities for Digital Rights)은 코로나19 관련 기술 사용에 있어 정보인권 보호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방역 과정에서 한국 역시 새로운 기술 시스템을 다수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을 참고하여 기술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과정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기술 사용에 있어 정보인권 보호 원칙<sup>12)</sup>

2020년 5월 15일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는 협의회의 다음 10가지 핵심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목적제한 및 비례의 원칙

목적제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술 또는 수집된 데이터는 위기 대응이나 복구를 위해 엄격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영구 금지의 원칙

이러한 기술과 데이터의 사용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삭제되어야 한다. 감염병의 위험이 충분히 줄어들시 그 사용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되어야 한다. 기술적이고 법적인 일몰 조항이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

3. 동의와 신뢰의 원칙

기술의 사용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고지권 및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유형의 강압이나 보상 제도도 부과될 수 없다. 그래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다.

4. 프라이버시 중심설계의 원칙

기술은 사용자와 모든 관련자의 프라이버시(예: 연락처)를 존중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특히 보건의료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재식별 또는 사생활 유출 가능성 등 실제 위험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5. 통제권의 원칙

가능한한 시민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사용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최우선 소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은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

가능한한 기술은 개방형의 기술, 데이터 모델, 형식 및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코드는 다른 시나 단체가 감사, 검증,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7. 대응성의 원칙

COVID-19에 대한 기술은 단독적인 조치로서가 아니라, 지구적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공중보건 당국의 기존 전문성, 필요 및 요구사항 및 그 집단, 문화, 행동을 이용해야 한다.

8. 참여의 원칙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하고 정책담당자와 시민들 사이의 순환성을 갖춘 강력한 피드백 구조를 포함해야 한다. 기술 솔루션 공급자의 선정 및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 인권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9. 사회 혁신의 원칙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성공적이고 공평하려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만큼 사회적인 혁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단지 기술적인 혁신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다.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지성, 행동, 사회적 응집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10. 공정성과 포용의 원칙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고 서비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접근성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기술은 소외 집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

12) RECOMMENDATIONS: SAFEGUARD DIGITAL RIGHTS WHEN USING COVID-19 RELATED TECHNOLOGIES  
[https://citiesfordigitalrights.org/sites/default/files/CC4DR\\_Recommendations%20BPosition%20Statement\\_Covid19tech%20final.pdf](https://citiesfordigitalrights.org/sites/default/files/CC4DR_Recommendations%20BPosition%20Statement_Covid19tech%20final.pdf)

### 3. 감염병 대응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한국의 법적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는 우선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감염병 예방법에 특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염병 예방법 사이의 관계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예방법의 일부 조항에서는 “○○○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감염병 예방법의 다른 조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 8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의료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 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이나 파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측면이 감염병 예방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

호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감염병 대응 과정의 일상적인 개인정보 처리는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와 같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를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sup>13)</sup>는 점에서,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2015년 메르스 대응 실패 이후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 대응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6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이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진료 내역, 신용카드 내역,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확진자의 동선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은 수차례 개정되었다.

## 4.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이슈

### (1)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

#### 가. 개요와 현황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과거 동선을 파악한다. 확진자가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우선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확진자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한 후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확진환자를 등록한다. 조사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에게 고지한다. 시·도 즉각대응팀의 지휘에 따

---

13)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2020.6.2.

라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 후,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을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를 이관하며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관련해서는 '증상발생 전 14일 동안'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를 파악하는데, 해외 방문력,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력,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종사·이용 여부, 집단발병 사례 관련성 및 병력 등을 조사한다.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는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는데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동선은 환자 면접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GPS나 카드 사용내역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sup>14)</sup>

물론 한국에서만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독특한 점은 환자들의 인터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록, 신용카드 거래내역, 위치정보, CCTV 영상정보 등 추가 정보를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또한 한국에서는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접촉자 추적앱(Contact Tracing App)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학조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정밀한 접촉자 추적이 힘든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기술을 통해 그러한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미 접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14)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2판. 2020.8.20. pp 19-23.

15) COVID-19 National Emergency Response Center, Epidemiology & Case Management Team,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ontact Transmission of COVID-19 in South Korea: Novel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Tracing Contacts, 2020.2.18.

## 추가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법은 제4장에서 역학 조사 일반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추가적인 정보의 요청과 처리에 대해서는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은 보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 요청권자 :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
- ▶ 요청 요건 :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정보제공 의무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 즉, 사실상 누구에게나 요청할 수 있음.
- ▶ 요청 대상 :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의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의료정보
  - 출입국 관리기록
  -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시행령 제32조의2는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제76조의2 2항은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찰관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이를 지원하는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등 28개 기관을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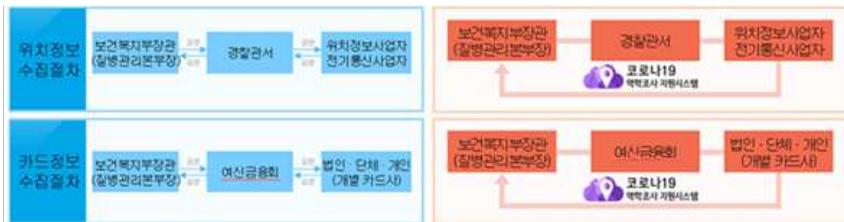
〈그림3〉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체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3.25)<sup>16)</sup>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하여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림4〉 역학조사지원 관계기관 간 협조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3.25)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2020.3.25.

〈그림5〉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동선관리 화면



\*출처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사용자 종합 안내서(지자체용) 제1-2판.  
(2020.9.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의 시스템을 '데이터기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sup>17)</sup> 새롭게 개발할 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 위치데이터, 카드사 결제내역 데이터 등 현재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에 더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 기록 데이터, 의료기관 이용 내역 데이터 등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

17) 보안뉴스.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2020.6.24.

다.<sup>18)</sup> 7월 1일에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KI-Pass)이 연계되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시설 출입이력 확인이 가능해졌다.<sup>19)</sup>

그런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법적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이 시스템의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역학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9월 29일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것을 보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역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조항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로부터 정보주체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단지 처리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법을 통해 이 시스템의 기능, 어떤 시스템과 연계되는지, 데이터는 언제 파기되는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는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역학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애초에 예정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추가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8) 김수정, 데이터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2020.9.11.

19)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지자체용-, 2020.7.

## 나.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 과정의 문제점

확진 환자의 과거 동선 추적을 통한 접촉자 식별과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진단 및 격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진료기록, 신용카드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영상 정보 등은 모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수집이 허용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감독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 민감한 추가정보 수집의 필요성과 비례성

현재 진료기록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관이 확진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위치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 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수사기관조차 범죄 수사라는 공익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물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역학조사의 특성상 필요할 때마다 감독기관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후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혹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령 ‘다른 수단으로는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인터뷰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정보의 입수에는 시간이 걸리며, 그 전에 확진자의 구두 진술로 웬만한 정보는 다 확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0)</sup> 확진자에 대한 인터뷰 외에 어느 정도 비율로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20) 시민건강연구소,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코로나19 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 2020.10. p94.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으로 인터뷰의 내용이 보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차이는 역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으로 인터뷰의 내용이 일부 보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용성이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할만한 정도인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을 확진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요구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통상 자유로운 동의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칫 정보주체의 동의가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을 현재처럼 법에서 규정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역학조사관과 확진자 사이의 신뢰와 인권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역학조사관은 확진자에게 역학조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할 경우에도 확진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들은 환자일 뿐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확진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간혹 일부 확진자들이 자신의 동선을 숨긴 사례가 기사화되고 해당 확진자는 사회적인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확진자의 무책임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역학조사 과정이 얼마나 프라이버시 침해적일 수 있는지 드러낸다.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한 학원강사는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겨 추가 감염을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구속 기소되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sup>21)</sup> 그러나 당시에 해당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도된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쏟아지고, 동선 공개를 통해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거짓말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21) 동아일보, '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2020.10.9.

침해과 같은 사회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면 과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다른 사례로 한 확진자는 가족들이 교회 활동을 반대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처럼 불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민감한 정보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 확진자는 인터뷰와 GPS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동선을 숨겼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sup>22)</sup> 위치정보의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확진자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항상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는 공무원에 의한 확진자 및 접촉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공무원에 의한 확진자 및 접촉자 개인정보 유출

1월 27일

부산 모 경찰서의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정보공유차원에서 보건소가 공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방 5곳에 게시함. 문건에는 당사자의 나이, 거주지, 기저질환 등의 정보와 함께, 남편의 회사, 자녀들의 학교 등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포함<sup>23)</sup>

1월 30일

양산시 공무원이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 촬영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역구 도·시의원과 지역 동장 등에 전달함. 전달

22) 연합뉴스 TV, "감염된 것도 힘든데"...동선 숨였다고 애먼 사람 고발, 2020.9.28.

한 공문서는 의심환자 이름과 나이, 국적 등 개인정보 포함.<sup>24)</sup>

1월 30일

태안군청 공무원이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외부에 누설.<sup>25)</sup>

1월 31일

성북구청 공무원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울 성북구 보건소의 내부 문건을 SNS 대화방을 통해 유출하여 확진자의 개인 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옴.<sup>26)</sup>

2월 4일

광주시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건소 문건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 공문을 출력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렸으며 이후 '인터넷맘카페' 등에 무차별 확산됨. 해당 문건에는 확진자와 가족 4명의 나이와 성별, 직업, 거주지역, 병원 방문이력, 질환 등의 정보가 담김. <sup>27)</sup>

2월 11일

신안군 공무원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시민의 인적사항과 동선이 포함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 이름은 가려졌으나 당사자와 가족 거주지가 읍면동까지 표기됐고 직업과 가족 직장명이 실명으로 담김. SNS와 지역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확산됨.<sup>28)</sup>

2월 19일

대구지역 경찰관이 확진자와 접촉자의 인적사항과 감염경로 등의 정보를 담은 공문서를 가족 등 지인에게 유출. <sup>29)</sup>

2월 22일

청주시 공무원이 청주시 대책회의 비공개 자료를 유출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확진자 부부와 가족의 이름 등)로 청주지역 주민들의 단체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됨.<sup>30)</sup>

2월 22일

창원시의회 전 의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보고서를

받은 뒤 자신의 가족이 들어있는 온라인 대화방에 이를 누설함. 발생보고서에는 확진자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었으며, 이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라오며 지역사회에 유포됨.<sup>31)</sup>

2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공무원이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하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됨.<sup>32)</sup>

### 감염병 의심자 범위의 자의적인 확대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는 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의 개인정보 역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의심자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역시 과도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의심자의 개념은 제2조의 15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의심자 개념은 감염병 예방법에 원래 포함되어 있었던 개념은 아니고 2020년 3월 4일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식별, 조치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 23) 서울신문,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 벌금형 선고유예, 2020.5.7.
  - 24) 오마이뉴스, 코로나19 정보 유출 양산시 공무원 '선고유예', 2020.9.11.
  - 25) 뉴시스, '코로나19 환자 정보누설' 태안 공무원 4명 불구속기소, 2020.3.30.
  - 26) 국민일보,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성북구청 공무원 3명 입건, 2020.2.11.
  - 27) 경향신문,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공문 광주시 공무원이 유출, 2020.2.12.
  - 28) 연합뉴스, 코로나19 공문·개인정보 유출 전남 공무원 등 7명 검거, 2020.3.8.
  - 29) The Fact,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3명 기소, 2020.8.24.
  - 30) 중앙일보, 코로나 확진 부부·가족 개인정보 유출-청주시 내부회의 자료, 2020.2.22.
  - 31) 노컷뉴스, '코로나 확진자 정보 유출' 전 창원시의장 벌금 100만 원, 2020.7.17.
  - 32) 노컷뉴스, 코로나19 공문서 유출한 서귀포시 공무원 직위 해제, 2020.2.25.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의심자는 ‘접촉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지만, 접촉자 개념도 현실에서는 규정에 비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WHO가 제시한 접촉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 기준)<sup>33)</sup>

-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 에서 15분 이상 접촉
-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물론 이는 국내 기준은 아니고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현장에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간혹 접촉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잠재적인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활용된 기지국 접속정

---

33)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2판. 2020.8.20. p32.

보 수집이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특정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접속기록을 무더기로 제공받는 수사 방식인데, 기지국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어왔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는 그나마 법원의 허가를 받지만,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한 기지국 접속정보의 수집은 법원의 허가도 없이 단지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장의 요청만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의 대량 감염 발생으로 관련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보건당국은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했다.<sup>34)</sup>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에 해당 클럽 주변의 17개 기지국에 접속한 내역을 기반으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명단이 제공되었는데<sup>35)</sup>, 이렇게 해서 선별된 사람들의 수는 10,905명에 달했다.<sup>36)</sup> 그러나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병 의심자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더구나 개인정보 수집의 역학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 해당 확진자가 클럽을 방문한 날은 5월 2일 새벽이었는데,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한 기간은 그 이전인 4월 24일부터였으며, 시간대도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 였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록 이들에게 방역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아무런 통제장치없이 특정하게 분류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

---

34) 이때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는 이용자의 통화 기록이 아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통화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주변 기지국과 정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동통신사는 기지국에 기록된 기기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고 있다. 통화 기록이 아닌, 기지국 서버에 기록된 모바일 기기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35) KBS. [팩트체크K] '이태원 클럽' 인근 방문자, 어떻게 파악했다?. 2020.5.12.

36) KBS, 이동3사, '이태원 클럽' 기지국 접속자 만여 명 명단 제출. 2020.5.12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지국 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sup>37)</sup>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기지국 수사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태원 클럽에서의 사례 이전에도, 구로콜센터 집단감염, 동대문 PC 방, 서래마을 와인바에서의 감염 사례에서 기지국 정보가 제공된 바 있다.<sup>38)</sup> 8월 15일 광화문에서 개최된 보수단체 집회 주변 기지국의 접속 정보도 수집되었다.<sup>39)</sup> 이와 같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의심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혹은 보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감독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가 필요하다.

###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

제76조의2 6항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업무 종료 시 지체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항 및 2항에 따라 애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질병관리청장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르면 수집 목적이 다하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네트워킹센터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바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수집된 확진자와 격리자 정보를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sup>40)</sup> 또한 중앙방역대책본

---

3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외,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2020.7.30.

38) 한국경제. '숨은 클러버들' 찾아낸 통신사...“정부 요청 때만 접속기록 제공”. 2020.5.13.

39) 연합뉴스, 이통3사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한다, 2020.8.19.

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있었던 한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메르스 환자 정보에 대해서는 영구보유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는 "당시 메르스를 앓으셨던 환자분들의 추후에 추가될 수 있는 합병증이나 건강상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계속 관찰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그 법적 근거를 직접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가 정부에 서면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sup>41)</sup>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정식 운영을 알리는 보도 자료에서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42)</sup>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환자가 2018년에도 발생했고 독감 환자 역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의 종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메르스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후 파기하겠다는 입장은 모순되며,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해도 되는지, 파기한다면 언제 파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sup>43)</sup>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33만 991명,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232만

40)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2020.6.3. <https://act.jinbo.net/wp/43013/>

41)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코로나19 관련). 2020.6.9.

42) 국토교통부 2020.3.25자 앞의 보도자료.

43) 정춘숙 의원실, 질병관리청, 232만명 코로나 개인정보, 영구보존 결정, 2020.10.22.

5,84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검역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2개월이 지나면 파기된다고 한다. 그러나 감염병웹보고(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확보한 232만 5,845명의 개인정보는 영구보존 중이다. (2020년 10월 현재) 한국의 확진자가 2만여명임을 고려하면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개인정보도 모두 수집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별도로 수집한 1만 73건의 위치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표1〉 최근 1년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현황

(단위 : 건)

구분	개인정보 현황								보존 기간
	성별	성명	주민 번호	보호자 성명	전화 번호	휴대 번호	주소	직업	
검역정보 시스템	남	193,720	90,611	-	-	87,503	-	-	2개월
	여	137,271	66,874	-	-	64,071	-	-	
감염병 웹보고	남	1,220,741	1,220,852	32,247	258,466	1,045,162	1,118,909	686,737	영구
	여	1,105,104	1,105,246	29,113	258,345	1,031,273	1,105,431	739,311	

※ 자료 : 질병관리청

\*출처 : 정춘숙 의원실 보도자료 (2020.10.22)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목적과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는 삭제하고 일부 정보는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수집한 추가 자료들 - 신용카드 이용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CCTV 영상 등 -은 동선 파악이 끝난 후에 바로 파기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 정보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방역 목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역 목적에 필요가 없는,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추후

에 감염병에 대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방역 목적에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 이후에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등 가명처리한 후에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치정보 수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제76조의2 제2항은 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관서가 단지 요청을 중계만 하는 것인지, 혹은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경찰관서 역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경찰관서가 직접 위치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태원 클럽 관련자 1316명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360만건을 직접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한편, 제76조의2에 따르면 개인의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직접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위치정보만 경찰관서를 통해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마치 경찰청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위치정보 수집의 남용을 막기위한 목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까지 민감한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한 위치정보 접근은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확대할 수 있다. 물론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은 필요한데, 이는 위치정보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적용되어야 하며 경찰청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뉴스1, '이태원발 코로나' 1316명 휴대폰 위치정보 390만건 분석. 2020.5.14.

## (2) 확진 환자의 동선공개

### 가. 개요

국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확진자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들의 동선을 공개해 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발했을 때 감염병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투명성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되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조사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 환자의 번호, 성별 및 거주지역, 주요 동선(환자가 방문한 일시 및 장소), 확진일시 및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문자로 확진자 발생 여부 및 주요 동선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등록된 시민들의 전화번호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라는 기능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모든 휴대전화에 방송형태로 발송된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거주민이라도 특정 시점에 다른 곳에 있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거주민이 아닐지라도 문자를 받을 수 있다.<sup>45)</sup>

동선공개에 법적 근거는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조항이다. 제34조의2 1항은 질병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sup>46)</sup>

---

45) 인천투데이, 긴급재난문자,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 걸까, 2017.11.15

46) 원래 2015년 조항이 신설될 때에는 정보공개에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공개에 법적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들기도 했다. 제6조 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추적하더라도 접촉자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확진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 확진자 주변에 어떠한 손님이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혹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나.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

그런데 일반에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세세해 일부 확진자들이 근거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에 노출되었다. 예를 들어 한 확진자는 부인과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처제만 양성 판정을 받아 불륜이 아니냐는 비난에 시달렸다. 또한 한 지자체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확진자 발생 공지에서는 성씨, 성별,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등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신천지 교인인 사실도 공개하여 당사자가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sup>47)</sup>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동선 공개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었다.<sup>48)</sup>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확진자가 되었을 때 찍힐 낙인을 감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황별 두려움(5점 만점)을 묻는 문항에서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추가 피해'를 두려워하는 정도는 평균 3.52점이었다. 이는 '무증상 감염되는 것'(3.17점),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은 이가 주변에 있는 것'(3.1점) 등 감염 관련된 항목보다 점수가 높았다.<sup>49)</sup>

---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동선 공개의 구체적인 근거 조항으로 보기는 힘들다. 결국 2020년 9월 29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동선 공개의 주체로 포함하였다.

47) 아시아경제, 확진자 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vs "공익 우선". 2020.3.9.

48) 한겨레, 강남3구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제각각'. 2020.3.5.

49)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신상털이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확진자, 202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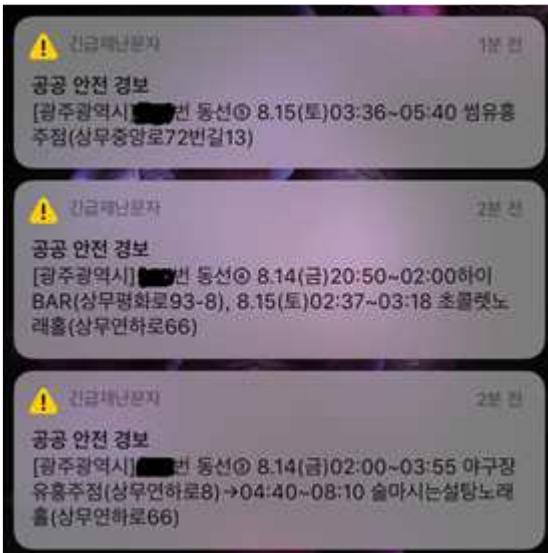
<그림6> 2020년 초 동선 공개 사례 :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이 공개되었음

■ 5/10 일  
 자택 → 14:00 타 시 동선 (접촉자 동거인 3명)

■ 5/11 월  
 07:10 자택  
 07:20 무봉초등학교 정류장에서 6002-1 버스 탑승  
 08:20 강남역 정류장 하차 이후 타 시 동선  
 18:40 강남역 버스정류장 6001번 탑승  
 19:20 한미약품 정류장 하차  
 19:30 한미약품 정류장에서 택시 탑승  
 19:40 택시로 귀가

■ 5/12 화  
 07:00 자택  
 07:00~09:00 자택 인근 야외 운동  
 09:00 귀가  
 13:00 자택 근처에서 택시 승차  
 13:23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13:40 택시 하차 후 자택 근처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구매  
 13:50 자택 귀가 (도보)  
 18:00 자택 인근 야외 운동 (접촉자 1명, 10일 접촉자와 중복)

<그림7> 노래방 도우미 의혹을 야기하는 긴급안전 문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 사례

- ▶ 부친의 한 확진자는 자신이 일하던 가게 상호가 공개되어 자신도 특정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음.<sup>50)</sup>
- ▶ OO전자 XX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 확진자는 시청의 브리핑과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동선은 물론 성씨도 공개되었으며, 남자친구가 신천지 교도인 사실,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도 알려짐. 이에 SNS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
- ▶ 한 남성 확진자와 다른 여성 확진자는 공개된 동선을 통해 함께 강남의 성형외과에 이틀에 걸쳐 2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를 불륜으로 추정하는 댓글이 잇따랐고, 이에 남성 환자는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당시 결혼을 앞둔 여성 환자도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도됨.
- ▶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5명 중 남편이 아내와 가족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SNS에 호소함. 아내는 중증 장애인 시설의 간호사인데 감염된 걸 모르고 장애인들과 함께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종 비난이 쏟아짐.<sup>51)</sup>
- ▶ 한 확진자는 부인과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처제와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아 불륜 아니냐는 억측에 시달림.
- ▶ 한 확진자는 특정 시간대에 노래방을 수차례 방문한 동선이 공개돼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음.<sup>52)</sup>
- ▶ 2020년 2월 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한 원인에 특정 종교 모임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종교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고조되었으며 해당 종교의 신도들이 많은 피해를 받음. 해당 종교의 내부 신고 집계 자료에 따르면 (3월 9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핍박 사례가 도합 5200여건 접수됨. 가정 핍박이 27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장 핍박으로 1200여건.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도 300건이 넘었으며 진료거부 100여건, 시설이용거부 70여건 순으로 나타남. 특히

납치·감금·폭행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강제개종도 8건으로 예상됨.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교인 2명은 고층 주택에서 추락사로 사망함. 직장에서는 해당 종교 신도라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일이 빈번함<sup>53)</sup>

▶ 2020년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의 확진자 발생 이후 국민일보는 해당 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명명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보도를 내보냄. 이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아웃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 이에 서울시는 성소수자가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려 갈 수 있도록 익명검사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검사 건수가 급증함<sup>54)</sup>

이처럼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9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여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sup>55)</sup> 그리고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확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역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여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 중앙일보, n차감염 우려에 동선 공개 확대-“사생활 침해” 논란 재점화, 2020.6.4.  
 51)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신상털이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확진자, 2020.3.4.  
 52) 한국경제, “왜 처제가 확진? 딱 봐도 불륜이네” 동선 공개에 우는 확진자들, 2020.2.28.  
 53) 천지일보, 신천지 “코로나19 인권침해 피해 신고 5200여건”... 가정폭력·직장해고 등, 2020.3.10.  
 54) 프레시안, 코로나가 이태원에 남긴 혐오의 흔적 - “이태원에서 흑여 게이인 게 들킬까 봐 무섭다고 했어”, 2020.6.17.  
 5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3.9.

또한 확진 환자들이 자신의 동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역학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

#### 다. 이동경로 공개 방식의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 발표 등 동선 공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동선 공개 방식을 개선하였다.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sup>56)</sup> 이에 따르면,

- ▶ 기본 원칙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 ▶ 공개되는 정보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이며,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이다.
- ▶ 공개되는 정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이며
- ▶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는 특정해서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간 및 시간 정보는 특정해야 잠재적인 접촉자가 자신의 접촉 여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이미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각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확진자 동선공개가 보다 일관성있고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문을 배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권위의 권고와 달리 여전히 확진자별 동선 공개 방식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각 확진자의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정한 동선을 근거로 한 확진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자체들이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면서 성별, 연령, 국적 등의 개인

---

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14일 정례브리핑). 2020.3.14.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는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4월 12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판)>을 발표하였는데, 추가 혹은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동선 공개의 기간을 ‘정보 확인 시부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로 규정하였다. 이는 동선공개 목적이 역학조사에서 식별되지 않은 잠재적인 확진자를 위한 것인만큼, 코로나19 병원체의 잠복기간 14일 이후에는 공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 공개되는 동선의 기준 시간은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에서 2일 전부터’로 수정되었다.
- ▶ 동선 상에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동선 공개의 취지가 제대로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다녀갔던 상점이나 식당들에 대한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확진자 발생 이후에 해당 장소에 대한 소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해당 상점이나 식당들은 매출 감소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안내문을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신원정보 노출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의 감염이 발생한 이후, 충청북도의 한 지자체는 “나이, 성별, ○○백화점 ○층 근무”와 같이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였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확진자 동선공개가 아우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sup>57)</sup> 또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는 언론사,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확진자의 개인정보 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것을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요청하였다.<sup>58)</sup> 그러나 언

57) 경향신문.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2020.5.20.

론사를 통해 보도된 동선 정보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30일 개정된 3판<sup>59)</sup>을 공개하였다.

-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 내용을 삭제’할 것을 명시하였다.
- ▶ 그 동안 시민사회가 문제로 지적해왔던 성별, 연령, 국적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거주지의 경우에도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sup>60)</sup>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방식이다. 아래 그림은 3판에서 권고하고 있는 정보공개 방식의 예시이다.

〈그림8〉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

**참고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

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주소 (도로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〇〇도	〇〇시	판매업	〇〇마트 (〇〇점)	〇〇도 〇〇시 〇〇길 〇〇 1층	6.29(월), 13:00~15:00	소독완료
〇〇시	〇〇구	대중교통	〇〇번 버스 (〇〇아파트~〇〇회관)	-	6.30(화), 13:00~13:20	소독예정

\*출처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58) 연합뉴스. 공개기한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구체 지침 마련. 2020.6.10.

59)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367694&tag=&nPage=3](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367694&tag=&nPage=3)

6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발생동향>확진자이동경로](#)

2020년 10월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기존 안내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 ▶ 홈페이지 정보공개 시,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정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 시 적절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 전달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텍스트(text) 형태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 ▶ 앞선 제3판에서 확진자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여전히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준수 예시>를 통해 동선 공개 방법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그림9> 동선공개 미준수 예시

① 유형 1

00시 #100번			
노출일시	상호명	주소	소독여부
10.5(월) 13:00~15:00	AB마트 (CD점)	00도 00시 00길12 1층	소독완료
10.5(월) 15:00~16:00	EF커피숍	00도 00시 00길34 2층	소독완료

② 유형 2

00시 #100번						
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주소 (도로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00도	00시	판매업	AB마트 (CD점)	00도 00시 00길12 1층	10.5(월), 13:00~15:00	소독완료

00시 #101번						
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주소 (도로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00도	00시	음식점	EF식당	00도 00시 00길34 1층	10.5(월), 13:00~15:00	소독완료

\*출처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예를 들어, 광진구청의 경우 한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접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림10〉 정보공개 지침 위반사례

광진구	식당	**식당	10.16.(금) 18:52~18:54 * 포장주문	- 마스크 착용 - 소독완료	도보
		접촉자 없음으로 파악되어 상호비공개(구두진술)			
광진구	약국	**약국	10.13.(화) 18:36~18:37 10.17.(토) 12:02~12:03	- 마스크 착용 - 소독완료	도보
		접촉자 없음으로 파악되어 상호비공개(CCTV 확인)			
광진구	마트	**마트	10.16.(금) 18:54~18:57	- 마스크 착용 - 소독예정	도보
		접촉자 없음으로 파악되어 상호비공개(CCTV 확인)			

\*출처 : 광진구청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의 동선공개 게시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자체의 브리핑을 통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의 경우, 동선공개 페이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핑<sup>61)</sup>을 통해 확진자의 직업이나 동선, 확진자 사이의 관계와 같은 개인정보를 노출하였다.<sup>62)</sup> 이는 지자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라. 평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와중에도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지침의 취지가 지자체로 정확

61)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ldx=659055&ptldx=637&mid=0802020000>

62) 연합뉴스, 창원서 또 일가족 4명 확진..사친 노부부 관련 1명 추가, 2020.11.15.

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이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 내 확진자의 동선과 타 지역 확진자의 동선을 따로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확진자와 접촉했는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누구든) 확진자와 접촉 했는지 여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확진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 내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와 시간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문 내용을 수용하여 감염병 예방법도 개정되었다. 감염병 예방법 제34조의2 1항은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2항을 신설하여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한단계 진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염병 예방과의 관련성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하고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항은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애초에 공개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선 공개의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확진자 동선 공개의 취지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모두 파악하기 힘든 경우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혹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동선을 통해 자신이 접촉자임을 인지하게 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오히려 동선 공개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이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안심하게 되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클지도 모른다. 가명화된 형태로라도 동선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동선 공개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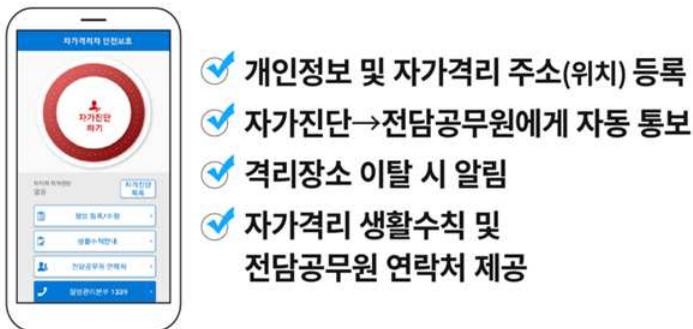
### (3)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

#### 가. 개요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시설격리 혹은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역법에서도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보건복지부의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환자의 접촉자 및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진단> 앱은 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를 대상으로 한다.<sup>63)</sup>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동작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휴대폰 움직임이 2시간 동안 없으면 2회에 걸쳐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 확인을 하게 된다. 오전, 오후 하루 2회 이상 증상발생 여부를 앱이나 유선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담당자(전담공무원용 앱이 별도로 있다)는 1일 1회 유선으로 격리상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그림1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기능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63)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2판, 2020.8.20. pp 28.

자가격리앱은 동의에 기반하여 설치한다고 하지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sup>64)</sup> 2020년 6월 10일 기준으로 '안전보호 앱' 설치율은 93.8%인데 해외 입국자는 95.5%, 국내 접촉자는 87.8%가 앱을 설치했다고 한다.<sup>65)</sup>

그런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자 정부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동되는 손목밴드 착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손목밴드는 성범죄자 등에게 착용시키는 전자발찌와 유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데, 이를 통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였다.<sup>66)</sup>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역시 손목밴드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협으로 취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sup>67)</sup>

그러나 결국 정부는 4월 27일부로 '안심밴드'라는 이름의 손목밴드를 도입하였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정부는 안심밴드의 착용이 본인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되고 시설격리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

64) 뉴스1.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 고민...자가격리앱도 강제화 검토. 2020.4.7.

65) SBS 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531명...안심밴드 착용자 누적 116명. 2020.6.12.

6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코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대" - 자가격리자의 공동체의식 촉구, 손목밴드 도입 신중해야 -, 2020.4.9.

67)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2020.4.10.

회가 지적인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지 않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격리조치 위반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를 취한다.<sup>68)</sup>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하였다. 9월 29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제42조 제2항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2항 2호는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앱 설치 및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2020년 4월 27일에 도입된 안심밴드의 착용자 수는 10월 10일까지 425명으로 나타났다.<sup>69)</sup>

〈표2〉 2020년 자가격리자 월별 무단이탈자 현황(2.19~10.10.)

(단위 :명)

구 분	계	2.1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10
인원	1,230	31	77	217	152	145	125	244	207	32

※ 지자체 보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남인순 의원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

확진자들은 환자이고 자가격리자들은 잠재적인 환자이다. 그러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안심밴드 정책은 자가격리자를 잠재적인 가해자, 그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일정한 강제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68)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안심밴드...거부하면 시설격리. 2020.4.27.

69) 남인순 의원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

<그림12> 안심밴드 도입 광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안심밴드를 도입합니다.**

**대상** 무단 이탈, 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동의를 받아 착용  
**기능** 자가격리자 안전호보 앱과 연계 → 휴대폰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안심밴드 훼손·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 → 경찰 출동, 확인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 시 즉시 고발
- ✓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 ✓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완전 배제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한국의 방역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정부는 보다 완벽한 성과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사실상의 앱 설치 강제, 전담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점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자가격리 이탈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손목밴드를 도입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손목밴드와 같은 감시장치의 도입이 다른 영역에서도 쉽게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성범죄자에 대해서 처음 도입되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범죄자도 아닌 자가격리자로 확대 되었다면, 향후에 또 다른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은 더욱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 (4) 출입자 명단 작성의 의무화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전파 추세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집합 제한 혹은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위해 단지 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넘어 특정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sup>70)</sup> 이러한 조치들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인데, 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출입자 명부 작성의 경우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없이 집합 제한 명령의 일환으로 함께 내려졌으나, 8월 1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제49조 1항 2의2호를 신설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기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월 1일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0% (2,032명)만 유선 통화가 가능했다고 한다.<sup>71)</sup>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시설유형, 그리고 개별적으로 집합 제한 혹은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장부로 작성할 수도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이용자는 네이버 등 QR발급회사로부터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을 생성한다. 이때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네이버 등 QR발급회사는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에 저장·관리한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서버 내에 저장·관리된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

70)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2020.5.8.

71)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 - 지자체용, 2020.7.

면, 방역당국은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Q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하여 이를 매칭해서 활용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으로도 연동되어 특정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의 목록과 특정 시설을 방문한 방문자의 목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하였다고 한다. ①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② QR발급 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분산하여 보관·관리하며, ③ 4주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동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할 것인가, 수기로 할 것인가일 뿐이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언제든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해당 시설에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13〉 전자출입명부 사용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 - 지자체용, 2020.

즉, 개인이 어디에 출입하였는지가 정부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출입자 명부 작성의 의무화는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시적인 감시에 가깝다.

출입 기록이 진정한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을 경우 출입 기록을 남겨놓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설에서 추후에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방문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에게는 통지해주겠다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면 진정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출입자 명부 의무화가 의도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자율적이고 덜 침해적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특정 시설 방문자를 엄격하게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도 출입자 명부 작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 제대로 하는지 감독할 수 있을만큼 행정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기로 작성된 명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출입자 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연락처를 보고 누군가 만나자는 연락을 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였다.<sup>72)</sup> 심지어 출입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매매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sup>73)</sup> 그렇다고 전자출입명부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유출 피해는 면할 수 있겠지만 훨씬 큰 규모의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체계적인 감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연계되어 어떤 확진자의 시설 출입 기록이나 특정 시설의 방문자 명단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시설 방문자 목록 화면을 보면 방문일시, 시설물명, 방문자 이름, 핸드폰 번호, 보호자명, 보호자번호, 14세 미만 여부, 가명 여부, 사업자번호, 시설물 대표번호, 시설물 주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72) 인천일보, “명부 보고 연락드려요” 계속되는 코로나 명부 ‘여성피해 공포’, 2020.9.21.

73) 머니투데이, 내가 적었던 ‘식당 출입자 명부’ 진짜로 불법거래 됐다, 2020.11.22.



있는 여러 쟁점들을 살펴 보면서 인권 원칙에 비추어 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방역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동선 공개 지침이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필요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 법적인 근거없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원칙도 명확하지 않다. QR 코드와 안심밴드 등의 통제와 처벌 중심의 대책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었다. 이처럼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고위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른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조치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시할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 인권을 포함하여 인권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들은 (필요할 경우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의 제한이 명시되어야 하며 방역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삭제 또는 파기 등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독립적인 감독의 필요성

국내 방역 정책의 제반 문제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행 당국이 ‘어떠한 정보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인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보건 집행 당국의 특성상 집행의 효율성 및 의료적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감염병 긴급 상황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공익을 위해 기본권이 일정하게 제

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제한이 남용되거나 긴급 상황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집행 당국의 외부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 즉 감독기구의 역할을 어디선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감독기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감염병 긴급 상황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로 전문가, 인권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감독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당국의 일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으나, 감염병 예방법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부여한다면 더욱 균형잡힌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감독기구는 보건당국이나 지자체가 공개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역학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법, 정책, 혹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한 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3) K-방역의 물질적 기반

과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와 같은 모델이 가능했던 기술적, 사회적인 조건이 존재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몇 시간만에 개인의 2주간의 행적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감시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문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주요 사회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식별자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통신 실명제를 통한 모바일 기기의 추적 가능성, 전국에 광범하게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이 그것이다. 물론 한국만이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시

시스템을 함께 갖추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지금은 감염병 대응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시민에 대한 감시 체제로 돌변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정치 권력은 과거의 독재자보다 권력을 남용하려는 욕망은 적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강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 과정을 보면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둘러싼 사회적인 합의를 구축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인권의 원칙 중 하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법이 활용되고 있다. 인권 침해적인 정책이 먼저 도입된 이후에, 법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도 없이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염병 예방법은 법적 근거 미비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3월, 8월, 9월 연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 정보의 제공 규정 확대 △지자체장 권한 확대 △전자출입명부 규정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도입 등을 보완하였다.

#### (4)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는가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만일 성공했다면, 성공에 기여한 요인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이 강력한 봉쇄 정책(lockdown)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극적인 접촉자의 추적과 검사가 있었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국가 감시의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보다 깊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국에서 사용한 감시 기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만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학조사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진자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내역, CCTV, 위치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해 확진 환자의 인터뷰를 보완한 것이 다른 나라와의 차별점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의 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진 환자에 대한 인터뷰에만 의존할 때 보다 얼마나 더 기여했는지는 데이터를 통해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잠재적인 접촉자 파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전혀 없다.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둘째, 진정으로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균형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격리자 통제 장치와 같은 감시 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감염병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진단 시약에 대한 빠른 개발과 승인, 드라이브 스루 및 워크 스루 등 창의적인 검사방법의 도입, 역학조사관의 적절한 충원,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공개,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마스크 착용 문화 등 인권 침해가 적은 다양한 요인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수단의 효과를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공적인 방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 정책은 단지 보건의료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방역만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와 사망자의 무조건적인 최소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감염병 발병 수준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나 인권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한다면 통제와 처벌 중심의 강압적인 정책에 비해 다소 방역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덜 인권 침해적이고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이 오히려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통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일수록 그 피해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집중된다. 비단 정보인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 영역에서, 그리고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단지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마지막 감염병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